

# 전자해도 (Database)의 유통체계 수립을 위한 국내법적·비교법적 고찰

서수경\* 서상현\*

한국해양연구소, 선박해양공학분소

ENC service and investigated related law of database distribution

Su-Kyong Suh\* Sang-Hyun Suh\*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 and Ocean Engineering.

E-mail: bori1004@kriso.re.kr

## 요 약

우리 나라는 3차년도에 걸쳐 전자해도 및 수치지도를 구축하였고, 1999년도까지 우리 나라 전역에 대하여 전자해도 및 수치지도의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공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까지 사용되어 오던 기존의 종이해도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생산품인 전자해도는 근본적으로는 선박의 안전항해와 해난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어 개발되었으나 해양정보의 공간정보화라는 측면에서 해양환경 보호 그리고 효과적인 해양행정 관리 등 해양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활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의 종이해도와 전혀 다른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전자해도 데이터를 공급하는데 있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거대한 시장에 적합하고 데이터를 공급하고 사용하는 동안 그리고 전자해도 데이터를 이용한 또 다른 상품을 제작할 때 상업적 측면에서나 안전성 측면에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급 체계를 채택하여 이 데이터의 수요자들이 보다 좋은 품질의 공간정보와 다양한 공간정보 상품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화된 저작물인 전자해도의 유통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어 국내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기준으로 데이터의 유통에 대한 국제 상거래 관념을 비교 분석하고 외국의 전자해도 유통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적합한 전자해도 공급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 I. 개요

### (1) 개설

최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특히 모든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데이터베이스의 거의 모든 거래영역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의 유통과 관련하여 구축된 데이터를 단순히 공급하는 차원이 아닌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보다 좋은 품질의 공간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단순한 기계적인 조작만으로도 또 하나의 저작물로 구성될 수 있고 편집, 수정이 가능한 데이터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포맷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유통시키는데 있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데이터의 시장성에 적합하고 또한 데이터를 공급하고 사용하는 동안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용한 또 다른 파생상품을 제작할 때 상업적 측면에서나 안전성 측면에서 그 데이터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관리에 대한 국내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뿐만 아니라 전자해도의 국제적 수요를 고려할 때 국제 거래 관념상의 데이터 유통 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실제상 이러한 데이터의 거래에 대한 구분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11월 미국 재무성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규칙안"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한 분석과 전자해도 데이터의 유통에 대한 다른 선진 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의 실정과 비교 분석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전자해도 유통체계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그 복제물을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전자적으로도 인도가 가능하고, 거의 비용 없이 완전한 복제물을 작성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수성 때문에 많은 거래 영역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이에 미국 재무성은 1996년 11월 7일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거래의 분류에 관한 규칙을 공표하였다. 이 규칙안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외국에 판매 또는 라이선스하는 등의 국제거래가 행해진 경우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고, 그 대가가 미국 내국세법 제861조의 미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하는 경우, 동법 제482조의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는 경우와 동법 제3장의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소득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등 동법의 몇 개 조문의 적용 관계상 당해 거래를 저작권의 매매 또는 라이선스 또는 저작물의 매매 또는 대여 또는 역무 또는 노하우의 제공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하여 IRS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칙안은 대부분 미국 저작권법상의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즉 복제가 용이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복제물은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전자적으로도 인도가 가능하고, 거의 비용 없이 완전한 복제물을 작성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기능적으로 동등한 거래는 동일한 취급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칙안의 핵심은 복제가 용이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국 저작권법상의 5가지 권리 중 복제권(reproduction rights)과 배포권(distribution rights)을 조합하여 생각함에 의하여, 배포권의 허락이 없으면 복제권이 허락되었더라도 이를 저작권의 이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이 규칙안 전문"III. 규칙안과 저작권법상 원칙의 관계"항목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으로 국제 거래상 저작권 또는 저작물의 이전(주: 매매, 교환, 라이선스, 대여를 포함한 개념)이 행해졌는가를 판단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상의 해석에 따라야 하지만, 일정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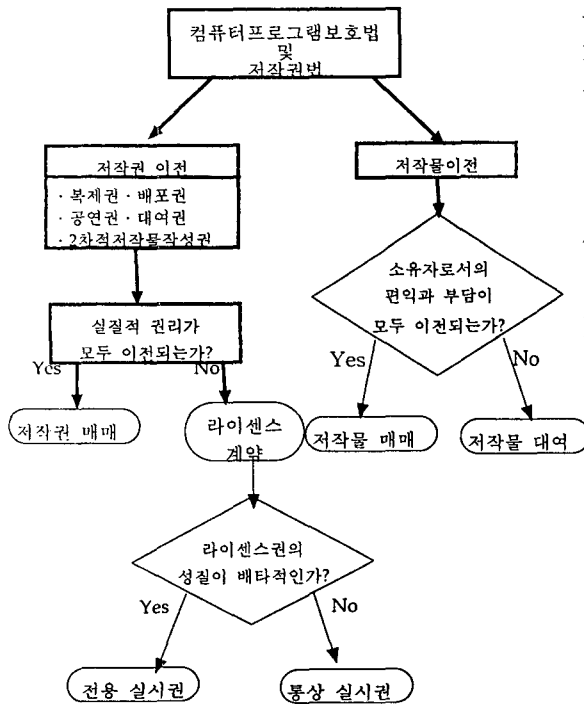
## II.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데이터의 거래 구분

### 1. 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규칙안

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수성 및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여, 문제가 발생한 영역 독자의 관점에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데이터 거래의 분류

즉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소프트웨어 제조업자들이 1991년경부터 저작권 자체에 대한 거래와 저작물의 복제물에 대한 거래를 준별하여야 한다고 하여, 예컨대 단순히 사용자가 사용하는 경우와 판매대리점에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할 복제권이 없는 경우에는 서적의 구입 및 판매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저작물의 복제물에 대한 매매로서 취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반대로, 판매대리점에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할 수 있는 복제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저작권의 라이선스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데이터의 거래에 대한 분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고 저작물의 매매와 저작권의 라이선스의 구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구분을 기준을 마련하여 처리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데이터의 거래에 있어서 어떤 거래가 저작권의 라이선스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저작물의 매매에 해당하는가의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서적의 구입으로써 동 서적의 저작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입자 측에서도 서적의 구입자와 마찬가지로 동 프로그램의 가치는 이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에 있고, 당해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보호된다는 것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규정들을 바탕으로 할 때 그 거래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flow chart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1)거래의 분류

국제 거래상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거래는 원칙적으로 이하의 4가지 거래의 하나로 분류된다.

- (i)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이전
- (ii)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저작물)의 이전
- (iii)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변경을 위한 역무의 제공
- (iv)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에 관한 노하우 제공

(2)저작권의 이전과 저작물의 이전의 구분

①저작권의 이전

다음의 저작권의 권리 중 어느 하나 이상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이전으로 간주된다.

- (i) 공중에 대한 판매 등의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할 권리
- (ii)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파생적 컴퓨터 프로그램(derivative computer program)을 작성할 권리
- (iii)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실현(public performance)하는 것
- (iv)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전시(public display)하는 것

②저작물의 이전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하였지만, 상기 (i) 내지 (iv)의 권리의 어느 것도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전으로 간주한다. 즉 공중에 대한 판매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사내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복제권을 부여받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이전은 아니라 저작물의 이전으로 취급하게 된다.

③저작물의 매매와 대여의 구분

저작물의 이전의 경우, 저작물의 매매 (또는 교환) 또는 대여 가운데 무엇이 행해졌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관련 사실과 정황을 고려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의 소유자로서의 편의와 부담이 이전하는지에 따라서 결정한다. 즉 소유자로서의 편의와 부담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매매로 간주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물의 대여로 간주된다.

④저작물의 매매와 저작권의 라이선스의 구분

저작물의 이전의 경우에, 저작물의 매매 또는 라이선스의 어느 하나가 행해졌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관련 사실과 정황을 고려에 넣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하여 모든 실질적 권리가 양도되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즉 모든 실질적 권리가 양도된 경우에는 저작권의 매매로 간주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의 라이선스로 간주된다.

(3)전자해도의 경우

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데이터의 거래 분류에 적합하게 들어맞는 실례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급대행업자에게 일정한 권한과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이를 통하여 전자해도를 공급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도 공급대행자로 지정된 민간업체와 수로국과의 관계에 따라 다시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공급대행업체는 단순히 국립해양조사원이 생산한 공간상품을 수로국과의 계약에 의해 데이터(상품)을 수령하고 이를 판매대리점과 같이 사용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그 상품을 온라인과 미디어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공급대행업체가 수로국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일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요구된 다양한 형태 및 포맷으로 된 공간상품을 제작하거나 업데이트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급대행업체의 참여방식은 데이터의 공급만을 민간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공급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업데이트 및 다양한 파생상품의 제작, 개발까지도 아웃소싱하도록 하여 주문판매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후자가 전자의 경우보다 참여 부분에 대한 폭이 훨씬 크며, 앞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민간참여 방식이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립해양조사원, 민간업체, 사용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민간업체가 수치해도 및 전자해도에 대한 많은 제작 경험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간업체의 자격에 대한 부분은 민간업체에게 발생될 수 있는 이익과 필요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간참여방식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수치해도 및 전자해도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업권을 독점적으로 제공할 것인가(전용실시권 부여) 아니면 비 독점적으로 제공할 것인가(통상실시권 부여)이다.

독점적인 방식은 캐나다의 CHS와 NDI와 관계에서 취하고 있는 방식으로 CHS가 파생상품의 제작, 업데이트, 공간상품의 공급 등의 권한을 NDI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하고 있다. 이러한 독점적 권한을 통하여 NDI의 기술, 마케팅, 자본 등을 활용하여 비 독점적인 방식에 비하여 적극적인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독점적인 방식은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파행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현재,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배포사업권과 관련하여 독점적으로 점유되는 것을 막고 있다.

#### (4) 고려사항

전자해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거래에 있어 특히 주의해야하는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복제권 관련

보통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와 관련하여 제작자들은 어떠한 행위를 복제라고 볼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분쟁이 발생한 여지가 많아 제작자들은 최종소비자에게 정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만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한다. 즉 멀티미디어적인 저작물의 제작 및 공급업자와 최종소비자와의 사이에는 중간업자가 개입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러한 경우에 저작물의 제작업자가 마련한 정보이용허락계약이 최종소비자와의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1988년 저작권법은 "전자형태의 저작물이(A form in electronic form)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복제 또는 개작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사용허락 계약하에 판매되어서 제3자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에는, 상이한 특약이 없는 한, 당해 양수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해도의 경우에는 보통의 저작물과는 달리 단순히 디스크나 CD-ROM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겨진 정보로 무엇을 하도록 허락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이점에서 이것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또한 국제 거래상의 관념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 복제권의 이전이 행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할 권리를 수반하지 않았다면 이는 저작권의 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 2. 유사품 제작 관련

일단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는 수시로 새로운 정보나 자료가 수정·증감 또는 보완되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변경행위는 크게 3가지로 첫째, 단순한 기계적 추가·보완·교정 등에 그치는 경우

에는 독창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별도의 저작물로서 보호받기는 어렵다. 둘째,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원저작물로 하여 상당한 범위의 추가·수정·증감 등의 변경이 가해져 창작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원래 데이터베이스의 2차적 저작물이므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셋째,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형식을 이용하되 대폭적인 변경을 하거나 전혀 다른 종류의 정보를 입력하여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고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이 아니고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해도의 유사품 제작에 있어 유사품과 복제품, 또는 새로운 상품의 구분에 있어 이를 참조하여야 한다.

### III. 전자해도데이터 공급에 대한 외국의 사례 분석

#### 1. 개요

수치해도 및 전자해도 제작의 경험이 많은 캐나다 수로국(Canadian Hydrographic Service, CHS)의 수치해도 및 전자해도 관리체계 및 공급체계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립해양조사원이 앞으로 추구하여야 할 전자해도 공급 및 관리체계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캐나다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국내의 공급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이에 일정한 권한과 License를 부여하여 이를 통해 전자해도를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민간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공급하는 것은 수로국 관점에서는 인력 및 자금의 부족을 민간부문에 의지하여 국가가 해야 할 공간정보의 생산 및 공급 등의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민간기업의 경우 데이터의 생산 및 공급을 통하여 일정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익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공간파생상품의 개발을 통하여 사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데이터를 생산함으로써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은 보다 좋은 품질의 공간정보와 다양한 공간정보 상품을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민간분야의 참여는 공공기관에서는 인력 및 기술 그리고 투자자본의 한계를 민간분야의 마케팅과 기술을 도입하여 전자해도의 활용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도 공급대행사로 지정된 민간업체와 수로국과의 관계에 따라 다시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공급대행업체는 단순히 국립해양조사원이 생산한 공간상품을 수로국과의 계약에 의해 데이터(상품)을 수령하고 이를 판매대리점과 같이 사용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그 상품을 온라인과 미디어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공급대행업체가 수로국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일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요구된 다양한 형태 및 포맷으로 된 공간상품을 제작하거나 업데이트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급대행업체의 참여방식은 데이터의 공급만을 민간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공급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업데이트 및 다양한 파생상품의 제작, 개발까지도 아웃소싱하도록 하여 주문판매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공급체계를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가 캐나다로서 캐나다의 공급체계 분석으로 통해 우리의 전자해도 공급방안에 대한 한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자.

#### 2. 민간분야와의 협력체계

캐나다는 CHS(Canadian Hydrographic Service)가 캐나다 영해의 전자해도를 생산하고 NDI가 CHS로부터 독점적 권한과 License를 부여받아 CHS데이터, 제품 및 제품의 갱신정보를 전세계에 제공하고 재사용인가 계약을 통해 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NDI는 CHS의 수치 해도 및 다른 수치 정보 제품의 시장화와 공급권을 획득하고 제품 생산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CHS의 협력기관으로 승인되어 이 중간공급자(NDI사)와 CHS가 협력하여 제품과 제품갱신정보를 생산하고 캐나다 정부 기관, 교육기관 등의 비영리 기구에 대한 전자해도의 공급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NDI사를 통해 전자해도 데이터, 제품, 갱신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CHS의 주요임무는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제품 생산, 품질 관리이며 반면에 NDI의 주요 임무는 제품 관리, 영업 및 배포뿐만 아니라 제품 배달 및 제품의 갱신에 필요한 기반 구축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요 임무는 어디까지나 업무에 따른 책임의 범위안에서 주어 진 것이며 사실상 CHS와 NDI는 각각의 업무가 공유되어 작업이 진행된다.

### (1)사용인가(License)

• 캐나다는 NDI에 다음의 독점적 권한과 License(이하 '사용인가'라 함)를 부여한다.

-CHS 데이터, 제품 및 제품의 갱신정보를 전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 재사용인가 계약을 맺어 이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CHS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품과 제품 갱신 정보를 생산하는 것.

• NDI는 최종 사용인가, 혹은 부가가치 재판매 사용인가에 의한 적절한 재사용인가를 계약하지 않고는 제3자에게 CHS 데이터, 제품 및 갱신정보를 이전할 수 없다. 이하에서 그러한 재사용인가를 NDI 사용인가라 하며, NDI의 사용인가를 받은 사람을 "NDI 사용인가자"로 부르기로 한다. 제3자가 데이터나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언제나 본 계약 하에서 이루어진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 CHS는 CHS의 데이터, CHS의 검수, CHS 검수에 대한 갱신정보를 캐나다 정부 기관/부서, 캐나다 대학 또는 교육기관 또는 CHS와 상호협정을 갖고 있는 외국 수로국, 비상사의 또 다른 사용자에 대해 직접 제공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CHS는 CHS의 데이터, 제품, 갱신정보에 대한 제공요청이 NDI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CHS는 특수상황하에서, NDI에서 명시된 당사자와 비영리기구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제품과 제품의 갱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제품을 필요로 하면 NDI의 사용인가는 CHS에 의해 결정된다.

### (2)재사용 인가 계약

NDI는 그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받는 방법으로 제품을 공급한다. 그 회사는 그 제품의 사용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타입의 라이선스를 사용하는데 대량 생산되는 래스터 차트 CD 제품의 경우에는 간략화된 라이선스가 공급자와 최종 수요자를 위해 사용된다. remaining product의 경우에는 End user license와 Value-Added Remarketer(VAR) license가 있다. 만약 그 제품이 항해 이외의 목적 예를 들면 routine GIS application과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라이선스 개념은 비교적 저작권, 복제 등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고 만약 그 제품이 ECDIS/ECS와 같은 것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End user license와 VAR license에 부수적인 조건들이 포함될 것이다. 그 조건이란 것은 그 제품을 갱신하여야 하고, 어떤 파일 수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의무사항에 영향을 주

는 다른 상황들이 발생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한 완전성을 유지해야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 (3)생 산(PRODUCTION)

• CHS는 CHS 검수 제품과 그것의 갱신정보를 생산하는 기존의 계획을 계속 이행할 것이며, NDI가 본 계약조건하에서 이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NDI는 CHS의 데이터 생산과 품질관리 담당 직원들과 협력하여 제품과 제품갱신 정보의 생산계획을 실행하고 지속할 것이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NDI는 이행 기준에 따라 캐나다 관할해역의 벡터차트와 래스터차트를 생산할 수 있다.

• CHS는 새로운 제품 생산에 대해 NDI가 요청할 경우 CHS 데이터를 이용하게 할 것이다. CHS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과 물품에 대한 소요비용을 요청할 수 있다.(파생상품의 생산권한)

• NDI는 기존제품이 커버하지 않는 구역에 대한 제품요청이 있을 경우 CHS에 통보한다. 다른 이유로 해서 캐나다는 필요로 하지만 상업성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 CHS는 NDI에게 그 제품의 생산을 요청할 수 있고, NDI에게 관리부가 동의한 수준에서의 생산원가를 보상해야 할 것이다.

• CHS와 NDI는 생산과 공급에 관하여 협력할 것이며, 특히 CHS와 NDI는 품질보증, 데이터 표준 및 연구개발과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종종 인력교류를 할 수 있다.

### 3.공급체계

앞서 서술하였듯이 CHS는 NDI와 공급계약을 통하여 해양에 관련된 수치 제품을 배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CHS에서는 NDI에게 데이터 배포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 NDI는 특별한 NDI 주주 및 다른 고객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특정 고객의 취향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는 것.

- 특정 고객에 대한 보다 빠른 서비스 제공.

• NDI는 제품 및 제품의 갱신 데이터의 이용에 대해 모든 캐나다 지역에서 승인된 두 개의 공식적인 언어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 CHS에 의해 제품이 승인되지 않은 캐나다의 관할 지역의 제품 생산에 대하여 NDI는 라이선스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거절해서는 안 된다.

• NDI는 NDI 라이선스 소유자로부터 주문의 수령을 48시간 이내로 캐나다의 모든 지역에 산업 표준 형식에 맞추어 기존의 제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NDI는 CHS로부터 공식적인 제품에 대한 갱신의 수령을 48시간 이내로 NDI 라이선스 소유자에게 갱신된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

CHS의 데이터 생산은 주로 각 지역의 지역 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CHS HQ에서 관리 및

유지하고 있다. CHS HQ에서는 각 지역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검사하고 여기서 품질이 인증된 제품(CHS-Certification)은 NDI를 통해 일반 사용자에게 배포하게 된다.

#### IV. 시사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CHS에서는 민간업체인 NDI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치해도 및 전자해도의 원활한 공급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민간분야의 마케팅과 기술을 도입하여 전자해도의 활용을 극대화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즉, 공공기관에서는 인력 및 기술 그리고 투자자본의 한계가 있음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부분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실례이다.

이러한 협조체제는 공공기관에서 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민간업체에게 과감히 아웃소싱(Outsourcing)함으로써 전자해도의 활용을 극대화하는데 좋은 선택으로 볼 수 있다. CHS는 NDI에게 라이선스 및 판매권한을 부여하고 민간업체는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일반사용자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판매를 통하여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며, CHS는 효율적으로 일반사용자에게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NDI는 최대한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일반사용자의 수요 및 마케팅분석을 통한 파생상품의 개발 및 서비스 질의 향상을 꾀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일반 사용자는 최상의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국가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 민간업체, 일반사용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형태의 공급체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1] 컴퓨터 소프트웨어 거래의 분류에 관한 규칙안, 미국 재무성, 1996.
- [2] 서수경, 서상현, 전자해도 공급방안과 관련 법규의 검토, 1998. 정보통신학회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 [3] The report from Canada-NDI agreement for marketing and distribution of ENC, 1997